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0. 30.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9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3. 10. 30)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공원녹지, 공용건축물 건립등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보강 및 신청사, 서부노인 전문요양센터등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따르는 새로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1,251명에서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5명에서 1,237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마포구의 표준정원은 1,170명(지도원93명은

제외)으로 현행 정원보다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신청사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의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하고자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한 1,23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263명(지도원 93명포함)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37명,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이 되겠음.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은 총 정원에는 포함되나 표준정원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정형기 위원) : 증원되는 12명의 인력 채용방법 및 인력 배치계획은?
- 답변요지 (이관재 총무과장) : 인력배치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증원되는 인력은 임업6급, 계약직, 행정9급등이며 채용방법은 임업6급은 자체승진에 의해 증원되고 행정9급은 서울시 공채인력을 지원받아 증원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10.2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공원녹지, 공용건축물 건립 등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개정골자

자원봉사센터·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보강 및 신청사,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따른 새로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1,251명에서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5명에서 1,237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 제2조)

### 3. 개정근거

- (1) 지방자치법(2002.7.18 법률 제6927) 제103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3.7.25 대통령령 제18064호) 제14조 및 제21조
- (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3.5.1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제4조
- (4) 행정자치부 자제12200 - 247(2003.5.9)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2003.5.9)호에 의한 표준정원 고시

###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함**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10.20)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1,251명”을 “1,263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225명”을 “1,23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251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225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 <u>1.263명</u>-----</p> <p>-----</p> <p>1. ----- <u>1.237명</u></p> <p>2. (현행과 같음)</p>